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7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정문・양문석・복기왕

김한규 • 이연희 • 이상식

박 정・임광현・신정훈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 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 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u>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회의 <u>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u>
	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 회경비대를 둔다. ②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한다. ③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 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 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 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7급 이상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 급 이하의 국회경비대 소속 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 역 및 직무 범위는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